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8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조인철・이건태・박용갑

이개호 • 주철현 • 한정애

문진석 • 안도걸 • 양부남

박수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,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있음.

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,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고자 함(안제19조, 제29조의6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3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3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3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3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19조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 제19조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 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) 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) 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성 과공유 중소기업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 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 자"라 한다)에게 2024년 12월 -----2034년 12월 31일-----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(이하 이 조에서 "경영성과급"이라 한다)을 지급 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 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 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 제하지 아니한다.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 (2) -----

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제29조의6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 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」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 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 과보상기금(이하 이 조에서 "성과보상기금"이라 한다)의 공 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 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의 근로자(해당 기업의 최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핵심인력"이라 한다)가 공제납입금을 5년(중소기업 또 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

<u>2034년 12월</u>
31일
,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6(중소기업 청년근로자
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
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
①
20241 12.9l 21.6l
<u>2034년 12월 31일</u>

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 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 여 5년) 이상 납입하고 그 성 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 금(이하 이 조에서 "기여금"이 라 한다) 부분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, 소득세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다.

- 1. · 2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제30조의4(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) ① 중소기업이 2024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 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세30조의4(중소기업 사회보험료
세액공제) ①2034
년 12월 31일

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 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
4 0 (5) 50 3 -1 6 \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